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4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박홍배 · 민병덕 · 이광희
박상혁 · 서미화 · 박정현
홍기원 · 전진숙 · 조계원
윤준병 · 이정현 · 박지원
김태년 · 박 정 · 김준환
이수진 · 김남근 의원
(17인)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써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됨.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구성은 사업장가입자가 약 76.2%, 지역가입자가 약 19.4%임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

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추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5조제2항 ·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제103조의3제3항 신설).
-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03조제2항 후단 신설).
-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4항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 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어업인 단체”를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를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어업인 단

체”를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를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의 단체는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추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전문위원회”를 “그 밖에 전문위원회”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금융, 경제, 연금제도 또는 법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가 추천하는 자 1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하되,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104조제2항제2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농어업인 단체”를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를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이 법에 따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 장 ·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 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 거나 위촉한다.	② ----- ----- ----- ----- ----- ----- -----.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서 <u>사용자 단체</u> 가 추천하는 자 4명	1.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u>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서 <u>근로자 단체</u> 가 추천하는 자 4명	2. ----- ---「 <u>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u> 」 제10조제2항의 총연합 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 로 상위 2개의 단체----- -----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으로서 다음의 자	3. ----- -----
가. <u>농어업인 단체</u> 가 추천하	가. <u>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u>

는 자 2명	<u>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u>----- -----
나. <u>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u>	나. <u>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u>----- -----
<u>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u>	<u><삭 제></u>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후단 신설></u>	② ----- ----- ----- ----- ----- ----- ----- ----- ---. <u>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의 단체는 해당 단</u>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u>사용자 단체</u>가 추천하는 자 <u>3명</u>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u>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u>가 추천하는 자 <u>3명</u>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u>농어업인 단체</u>가 추천하는 자 <u>2명</u> 나. <u>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u>가 추천하는 자 <u>2명</u>	<u>체가 추천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추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u> 1.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u>----- ---<u>4명</u> 2. ----- ---「<u>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u>」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u>4명</u> 3. ----- ----- 가. <u>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u>----- ----- 나. <u>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u>
---	---

<u>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u> <u>가 추천하는 자 2명</u> 4. (생 략) ③ ~ ⑦ (생 략)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 략) <u><신 설></u>	<u>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u> -----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금융, 경제, 연금제도 또는 법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u> <u>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u> <u>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 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가 추천하</u>
---	--

<신 설>

③ (생 략)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는 자 2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
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가 추
천하는 자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
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
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가 추천
하는 자 1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위원회에서 추천하
는 자 2명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운
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용위원회
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하되, 2
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그 밖에 전문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생략)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4명

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
-----4명

4. -----

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

나. <u>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u> 다. <u>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u> 5. (생 략) ③ ~ ⑦ (생 략)	----- 나. <u>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u>----- -----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